

# CPD 교육위원회



남 순 성

(주)이제이텍 대표이사  
한국도질및기초기술사회 CPD교육위원장

기술사 업무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술사 국제통용성 업무의 일환으로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및 Washington Accord(WA) 조기 가입 추진, 국제수준의 기술사 계속교육이수 의무화를 추진하여 기술사법(법률 제 8268호(2007. 1. 26. 공포, 2007.07.27시행)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기술사회에서는 기술사 교육훈련의 제도화에 따른 국제기준의 계속교육제도 정착과 국가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의 기술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체CPD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술발표와 세미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CPD교육 이수 인정학점을 획득하게 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 교육기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5호)으로 지정되어 기술사 계속교육을 주관하여 매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국기술사회가 주관하는 계속교육 이수 시에는 교육시간 전부를 학점으로 인정받지만, 우리회의 자체교육이나 기타 학회 등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등의 참석 시에는 교육시간에

가산점 0.6을 곱하여 학점이 인정된다.(별첨 기술사법 중 기술사 교육훈련(CPD)관련 법령)

2010년에는 기술사법개정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술사 계속교육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올해의 우리회 자체교육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CPD 교육계획(2009)

▶ 매 홀수달 둘째 월요일CPD교육 1시간씩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1월 12일 : Jet Grouting 공법의 허와실(강사: 심재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별관 강의실

3월 10일 : 공동구 심포지움(동부금융센터 다목적홀  
13:30-18:00) 주제발표 7건

5월 18일 : 사면안정기술공법(강사: 송평현)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별관 강의실

7월 20일 : 인공섬(강사: 장연수 동국대 교수)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별관 강의실

9월 14일 : 대심도터널(강사: 섭외중)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별관 강의실

11월 12일 : 가을기술발표회 참여(경인운하 또는 4대강  
정비사업 중 토질및기초분야 역할) 기타 기  
술발표회, 현장견학 참가 등이 CPD교육 이  
수로 등록관리

▶ 전국기술사대회(한국기술사회 주관)

가. 일 시 : 5월 30일(토) 09:00~18:00 8학점인정

나. 장 소 : 오전 - 한양대학교(본교) 올림픽체육관,  
오후 - 한양대학교(본교) 제2공학관·204호

## 2. 기술사 교육훈련(CPD) 관련 법령 주요 사항 요약

### 2.1 교육 대상 및 이수학점(인정기준)

#### 1) 교육훈련 대상

▶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技術士(자격증 취득 1년 후  
부터)

※ 교육면제 대상 : ①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  
를 수행하지 않는 기술사, ②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교육  
불가 사유를 소명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사

#### 2) 이수학점(매 3년마다 90학점 이수)

▶ 3년 이상 기술사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술사가 기술  
사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미리 45학점 이수

#### 3)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 90학점중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수강교육 각각 12학  
점 이상 필수

### 2.2 교육훈련의 종류

#### 1) 수강교육

▶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

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외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2) 자율학습활동

▶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  
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  
는 활동

## 3. 별첨-기술사법 중 기술사 교육훈련(CPD) 관련 법령

### 3.1 법률 제8268호(2007. 1. 26. 공포) 기술사법 개정내용 중 기술사 교육훈련(CPD)관련 법령

#### 1) 기술사법 제5조의3 (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  
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간 기술사자  
격의 상호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  
차 및 교육기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술사법시행령 제12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 ①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기술사법시행령 제13조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① 기술사가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5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교육훈련의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

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2]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및 인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 가. 수강교육
    - 1) 기본교육 :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사회 및 경제의 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기준, 기술사 관련 국내의 제도, 국제계약, 외국어 등의 교육
    - 2) 전문교육 : 기술사 종목별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자율학습활동
    - :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기술사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하는 활동
- 2.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 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이수하는 90학점과 45학점의 교육훈련에는 제1호(가목)의 기본교육과 같은 목
  - 2)의 전문교육이 각각 12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

구분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기준치	단위	인정 최고 학점	
수강 교육	(A01) 교육기관교육	(A0101) 「기술사법시행령」제 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국내외 최첨단 기술 세미나, 심포지움, 포럼 등	5~20	1건	90
			일반적인 기본교육, 전문교육	1	수강시간	
	(A02) 법정직무교육	(A0201)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1	수강시간	60
	(A03) 대학전공교육	(A0301)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과정 교육		10	취득학점	60
	(A04) 그 밖의 수강교육	(A0401)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 교육		0.6	수강시간	18
자율 학습 활동	(B01) 논문 등의 발표 및 저서 등의 집필	(B01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 논문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심포지움,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		10~60	1편	60
		(B0102)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발행하는 기술 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10~50	1편	48
		(B0103)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를 포함한다)		50	1편	60

[별표]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계속)

구분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가중치	단위	인정 최고 학점
자율 학습 활동	(B02) 연수 등의 강사	(B02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강연, 기술설명회 등의 강사 등(기술사 수강교육 강사로서의 참가를 포함한다)	2	강의시간	60
	(B03) 기업(연구기관)내 연수 및 OJT(on the job training)	(B0301) 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 참가	1	참석시간	12
	(B04) 기술지도	(B0401) 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활동	3	지도시간	36
	(B05)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B0501) 현상신기술, 신공법제안 보고서	10~30	1편	30
		(B050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의 기술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업무	30	1회	30
		(B0503)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한 업무	60	1건	60
	(B06) 자기주도 학습활동	(B0601) 통신교육(종료증서에 따른다)	1	수강시간	60
		(B0602) 자율학습(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1건	12
		(B0603)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0.6	참여시간	18
	(B07) 업무활동	(B0701) 기업(연구기관) 등에서의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	2	참여기간 (1개월)	36
	(B08) 그 밖의 자율학습 활동	(B0801)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	1	투여시간	30
		(B08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20	1회	24
		(B08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심의회, 연구회 등의 위원, 학회 및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20	1회	24
(B0804) 그 밖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교육(CPD)에 해하는 것		0.6	1회	18	

비고 :

-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 법령직무교육, 그 밖의 수강교육, 심의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이 발행한 교육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외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기간 안에 해당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과 저술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서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자율학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건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나 1학점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학점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업무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은 참여기간과 업무활동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 학회, 심포지엄, 학술지 등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건별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